

유가자유화를 앞두고

강 신 민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행정사무관〉

유가연동제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간에
그것은 기업의 책임이라는
점을 각인시킴으로써
정유사 스스로의 자생력
배양에 도움이 되었다.

부는 지난 30년간 석유제품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유가 및 수출입등 석유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한 개입을 하여 왔다.

그것은 석유가 전산업의 기초에너지원인 동시에 국민생활의 필수품으로서 그 가격과 공급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반면 국내에서는 원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아 전량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공급구조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국내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과 국내외의 개방화 · 자유화 추세에 따라 정부규제로 인한 비효율 및 국내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가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부각되므로써 석유산업을 자율화하여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점증되어 왔다.

이에 지난 94년 2월 이후 석유가격 전면 자유화의 전단계로서 국제석유가격 및 환율등에 연동하여 매월 국내가격을 조정하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므로써 유가 전면 자유화에 대한 토양을 마련하였다.

정부가 자유화의 전단계로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우선 석유가격이 예전과 달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서 국내관련산업 및 소비자등 경제주체가 유가 자유화 이후의 상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함양하고 유증간 가격구조를 국제화하여 유가 자유화시의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또한 유가연동제는 기본적으로 국제시장가격을 국내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가격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인 민간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간에 그것은 기업의 책임이라는 점을 각인시킴으로써 정유사 스스로의 자생력 배양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오는 97년 1월부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로 이제 석유가격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유가 전면 자유화가 시행되면 석유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으로의 전가가 어렵게 될 것으로 공급자는 항상 원가 상승요인의 제거 또는 대응방안을 스스로 강구하게 될 것이며, 경쟁력 확대를 통한 수익 확대등의 혜택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향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격 결정 주체가 될 정유사등으로 하여금 경영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원유도입, 정제 유통부문에서의 경쟁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유사는 경제적인 원유 확보 및 변동위험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상류부문에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정유부문의 수익성 악화 및 위험을 최소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 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의 지나친 유통망 확보 경쟁을 지양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등을 위한 고도화시설 확충등 생산적인 투자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유가연동제라는 유가 자유화의 실험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유가 자유화라는 새로운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정부나 기업, 소비자등의 지원과 부단한 적응노력을 기대해 보며, 유가 자유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



유가 전면 자유화가
시행되면 석유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으로의
전가가 어렵게 될 것이다